

# INTERNAL INFORMATION MANAGEMENT POLICY

## I. PURPOSE

이 Policy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한국의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·정확한 공시 및 임원·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II. POLICY

- a. **(내부정보의 관리)** 임원·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b. **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** 임원·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·외부감사인·대리인, 회사와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c. **(언론사 취재 등)**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.
- d. **(보도자료 배포)**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e. **(정보 전달체계 구축)** 공시책임자는 중요한 내부정보, 외부정보, 최대주주 관련 정보, 지분정보 및 종속회사 관련 정보가 공시담당자인 CFO의 리뷰를 거쳐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 III. PROCEDURE

- a. 내부정보의 집중

(i) 임원 및 각 부서장(Division Head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내부정보\*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
\*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
2.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
3.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
(ii) 모든 이사회 및 대표이사 결정사항은 결재과정에서 공시담당자인 CFO의 사전 리뷰를 받아야 한다.

## b. 외부정보의 집중

(i) 공문, 통지서, 소장 등 대외문서의 접수는 공시담당자가 담당하며, 공시담당자는 접수된 대외문서를 접수당일 확인한 후 사내 재배포하되, 중요정보\*의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(당일) 보고하여야 한다.

\* 임상시험 중지, 임상결과, 특허취득, 품목허가결과 및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, 기술이전계약 해제·해지, 거래상대방의 거래중단/계약해지 통지, 소장 및 판결문, 벌금·과태료·과징금·추징금 등 통지, 영업정지·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통지, 그 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통지 등

## c.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

(i)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\*를 적시(당일)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\* 최대주주 변경 사실,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또는 경영권변경 계약 체결·해제·취소, 최대주주 소유 주식 담보제공계약 체결·해제·취소(담보권 실행 시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

#### **d. 지분정보의 모니터링**

- (i)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정보를 적시에 투자자에게 알리고 임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법령상 지분공시의 무에 대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공시의무 발생가능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.

#### **e.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**

- (i) 회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종속회사의 공시의무사항\*으로 정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\* 종속회사의 부도발생, 회생절차개시신청, 해산사유발생, 포괄적 주식교환·합병·분할 및 일정금액 이상의 영업정지, 증자·감자, 중요한 자산·영업 양수도, 증권관련 소송제기 등

## **IV. EFFECTIVE DATE OF POLICY**

이 Policy는 2021년 12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